

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신영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63
------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10.

발의의원 : 신영희 의원, 채명지 의원

1. 제안이유

-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·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,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.
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- 나.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설치,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규정함. 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
- 다. 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,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함. 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, 제10조의3

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2. “영유아”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3. “모유수유실”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.
4. “모유착유실”이란 유축기 등을 이용하여 모유를 모으거나 모유를 냉장 보관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한 장소를 말한다.
5. “모유수유 상호 결연제”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임산부 등에게 지도, 상담,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산부 등을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.
6. “이동형 시설”이란 이동하여 다니는 곳에서 임산부 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모유수유실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모유수유실 등 설치)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강 유지·증진을 위

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실·모유착유실을 설치·운영하도록 권장하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청사(군청사, 읍·면사무소 및 보건소 등) 및 군 산하 공공기관

2. 공공건물(우체국, 도서관 등)

3. 공중이용시설(대형마트, 공원 등)
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,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교육지원 등) 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를 설치·운영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) 군수는 모유수유실·모유착유실 설치·운영을 향상 및 모유수유 실적의 증진을 위하여 그 설치·운영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간의 모유수유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모유수유 홍보 등) 군수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실천·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,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유수유 및 출산율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8조(예산의 지원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·운영 및 권장
 2.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
 3.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군수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·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모자보건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3(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·홍보·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,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서명날인서

의원명	서명	날인
신영희	신영희	
채명지	채명지	